

의안번호	2206029
의 퇴 인	김태년 의원
회 답 일	2024.11.29.
추 계 번호	24E533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관광사업자가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납부하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5년 109억원 등 2025~2029년 총 1,845억원(연평균 369억원)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

- 2025~202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1,378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467억원 증가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(안 제106조의11)	109	434	434	434	434	1,845	369
- 국세(74.7%)	81	324	324	324	324	1,378	276
- 지방소비세(25.3%)	27	110	110	110	110	467	9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6조의11(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) 신설	○ 관광사업자가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납부하는 제도를 신설 - (현행) 송객용역을 공급하는 매출자(관광사업자)가 매입자(면세점사업자)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 * 매출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- (개정안) 매입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매출자 대신 부가가치세를 대신 직접 납부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106조의11(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) 신설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세수효과는 송객용역 공급가액 규모 추정치(최근 면세점 매출액 평균액 × 송객수수료 추정비율)에 부가가치세율 및 부가가치세 신규채납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함
 - 송객수수료 추정비율 등은 최근 업계 추정치를 반영한 수치임
 - 매출자(관광사업자)의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해당 세수 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으므로, 개정안에 따라 매입자 납부 특례 신설 시 송객용역 공급가액 중에서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신규채납액 비율만큼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제
- 최근 실적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추정액이 향후 추계기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제
- 개정안을 ‘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’는 부칙을 참고하여, 개정안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세수효과를 추계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추정방법) ‘최근 면세점 매출액 평균 × 최근 면세점 매출액 대비 송객 수수료 추정비율 × 부가가치세율(10%) × 최근 부가가치세 징수결정액 대비 신규채납액 평균 비율’의 방식으로 추계

- 최근 5년간 면세점 매출액 평균은 18조원 수준¹⁾

[표 2] 최근 면세점 매출액 현황

(단위: 조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
매출액	25	16	18	18	14	18

자료: 면세점협회 통계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제공

- 최근 면세점 매출액 대비 송객수수료 추정비율은 20% 수준²⁾
-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징수결정액 대비 신규채납액 비율은 11.9% 수준³⁾

[표 3] 최근 부가가치세 징수결정액 대비 신규채납액 비율

(단위: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
비율	12.3	12.5	10.4	11.1	13.3	11.9

자료: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제공

- (세수효과) 관광사업자가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납부하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5년 109억원 등 2025~2029년 총 1,845억원(연평균 369억원)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

- 개정안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, 2025년의 경우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정신고분이 징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, 당해연도 귀속분의 경우 당해연도에 3/4 징수, 차년도에 1/4 징수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

1) 면세점협회 통계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제공

2) 2024년 업계 추정치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제공

3) 국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제공

- 2025~202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1,378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467억원 증가 예상

[표 4]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시 세수효과: 2025~2029년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109	434	434	434	434	1,845	369
- 국세(74.7%)	81	324	324	324	324	1,378	276
- 지방소비세(25.3%)	27	110	110	110	110	467	93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